

제2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8. 3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년 8월 30일
전문위원 허 은 옥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84
- 나. 발 의 자: 강선영 의원 외 6명
- 다. 발의일자: 2021년 8월 13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8월 18일

2. 제안이유

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바로잡고 아동위원의
임무 및 자격,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역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
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목적 및 근거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. 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를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함. (안 제2조)
- 다. 상위법에 맞게 아동위원의 임무를 추가함. (안 제3조)
- 라. 아동위원의 정수를 동별 여건에 맞춰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
있도록 개정함. (안 제4조)

- 마. 아동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. (안 제5조)
- 바. 협의회 기능을 일부 개정함. (안 제8조)
- 사. 임시회의의 소집요건을 추가함. (안 제9조)
- 아. 조직개편에 따른 협의회 간사 담당팀장 개정. (안 제11조)
- 자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해당부서: 아동청소년과
- 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1. 8. 17. ~ 8. 22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취지

- 우리구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근거법령인 「아동복지법」에 맞게 인용 조문 및 내용을 개정
- 안 제2조 정의를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함.

- 안 제3조 위원의 임무에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임무를 추가

□ 아동복지법

제14조(아동위원) ① 시·군·구에 아동위원을 둔다.

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,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

- 안 제4조 위원의 정수는 동별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, 최대 50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을 위해 교육청, 경찰서, 관내 학교, 사회복지시설,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
- 같은 조 제2항에 부적절한 사람이 아동위원에 위촉되지 않도록 자격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음.

□ 개정조례안

제5조(위원의 위·해촉)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4.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위촉기준은 위촉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서 직접 위원의 위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, 조례로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.

- 안 제9조 회의에서 제2항의 임시회의 소집의 요건으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,
- 안 제11조의 간사는 조직개편에 맞춰 기존 ‘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주사’에서 ‘소관업무 담당팀장’으로 개정하였고
 - ※ 아동위원협의회 담당팀: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일부문구를 개정하였음.

□ **정비대상 용어 예시**

당해 → 해당, ~인 자(者) → ~인 사람, 기타 → 그 밖에, 잔여기간 → 남은기간,
1회에 한하여 → 한 차례만, 범위안에서 → 범위에서

다. 종합 의견

- 「아동복지법」 제14조에서는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
 -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
 -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
 - 전담공무원,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기 위하여
- 시·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5항에서 아동위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·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- 이에 우리구에서는 1994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으며, 2010년 9월 전부개정 이후 크게 개정하지 않아 상위법 인용조문 및 일부 문구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.

-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이에 따른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2021년 7월 아동·청소년 복지 전담부서인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되었음.
-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아동위원협의회의 임무, 자격, 회의소집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며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.

참고**아동위원협의회 현황****□ 아동위원협의회 구성현황**

- 인원: 49명
- 임원: 회장(채자혜), 부회장(최석진)
- 회의: 정기회(상·하반기 각 1회), 임시회(필요시)
- 구성현황

성 별			직 종 별					
계	여	남	계	지역봉사자 (통장, 직능단체 등)	자영업, 회사원	어린이집 관계자	복지 종사자	도서관, 교육 종사자
49	40	9	49	25	7	6	5	6

참고**관계 법령****□ 「아동복지법」**

제14조(아동위원) ① 시·군·구에 아동위원을 둔다.

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,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
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
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